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1. 2. 12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신규시설인 구미체육관과 기존시설인 시민운동장에 대한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상충되는 자구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골자

-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때, 용어의 정의를 “사용료”를 “이용료”로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정함. (제3조 제4항)
- 시민운동장, 구미체육관등 시설을 『관리비 부족,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다른 조항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중적인 문구로 보아지므로 이를 삭제함. (제5조 제1항)
- 제5조 제3항의 “제20조”는 “제16조”로 하여 바로잡고, 제8조 제1항중 “사용”을 “이용사용”으로 하여 관련되는 조항과 연관되게 수정함.
- 제9조 제1항의 “이 초대권의 매출액 수입에”에서 『이 초대권』이라는 불분명한 문맥을 『이 경우에 초대권』으로 “경우에”를 삽입하여 명확히 함.
- 제14조 제1항의 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할수 있다라는 것은, 본 조례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개방하여야 하며”를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시시설은 관리비 부족,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3항중 “제20조”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중 “사용”을 “이용사용”으로 한다.

안 제9조 제1항중 “이 초대권의”를 “이 경우에 초대권의”로 한다.

안 제14조 제1항의 제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③ 생략 ④개인이 사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u>사용료</u> 를 납입하고 <u>사용권</u> 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름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개인이 사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u>이용료</u> 를 납입하고 <u>이용권</u> 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름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시민운동장, 구미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u>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시설보수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u>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시민운동장, 구미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u>개방하여야 한다. (</u> <u>삭 제</u> <u>)</u>
제5조 ② 생략 ③----- 운동기구와 <u>제20조</u>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있으며, ----- ----- -----	제5조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운동기구와 <u>제16조</u>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있으며, ----- ----- -----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u>사용</u> , 종계방송,상행위사용, -----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u>이용사용</u> , 종계방송,상행위사용, ---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1]과 같다. <u>이 초대권의</u>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 -----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1]과 같다. <u>이 경우에 초대권의</u>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략 1~2 생략 3. <u>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u>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3. <u>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u>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의 육상경기장·축구장과 구미체육관 등을 말하며, “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사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 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등 행사
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시민운동장, 구미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6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1] 내지 [별표4] 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1] 과 같다. 이 **경우에**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을 위한 각종경기 및 행사
4. 등록된 체육경기·동호인단체의 사용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 1,000원
2. 어린이 : 500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폐지)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 및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 분			체 육 경 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시 민	트랙	조 기	40,000원	130,000원	○규정한 사용료는 평일 기준임.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퍼센트, 야간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보조경기장만 사용시의 금액임.
		주 간	40,000원	130,000원	
		야 간	50,000원	150,000원	
운동장	필드	조 기	60,000원	160,000원	
		주 간	60,000원	160,000원	
		야 간	80,000원	200,000원	
유 료 입 장		입장수입의 20%	입장수입의 20%		
구 미	주경기장	조 기	60,000원	200,000원	
		주 간	60,000원	200,000원	
		야 간	80,000원	300,000원	
체육관	보조경기장 (면가준)	조 기	30,000원	50,000원	
		주 간	40,000원	80,000원	
		야 간	50,000원	100,000원	
유 료 입 장		입장수입의 20%	입장수입의 20%		

[별표2]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시민운동장	트랙 필드	1회	2시간		500원	300원	○ 평일 주간기준 사용료임.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을 말함.
			"		500원	300원	
구미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1면 기준)	1회	2시간		2,000원	1,500원	
			"		1,000원	800원	

※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의 사용료는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퍼센트, 야간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체육경기란 2개이상의 서로다른 단체가 팀으로 편성되어 경합하는 순수한 체육경기에 한하며, 프로축구대회, 시장기 각종대회, 상공회의소장기 쟁탈전 축구 대회 등을 말한다.

※체육이외 경기란 체육경기 이외 모든 경기를 말하며 사원체육대회, 향우회, 음악회, 동창체육대회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별표3]

상행위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 전 또는 부 착 광 고 물			게시면적 1㎡당(일)		공개입찰.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 양 광 고 물 (에드벌룬 등)			1일, 1개		7,000원						
프로그램 및 선전 책자 등의 판매행위			판매부수 및 단 가		판매부수 × 단가 × 20%						
영 화 촬 영			주 간 야 간		40,000원 60,000원						
중 계 방송료	구		분		텔레비전		라 디 오				
	체육경기	국 내		40,000원		20,000원					
		국 제		60,000원		40,000원					
	체육경기 이외	국 내		100,000원		50,000원					
		국 제		120,000원		60,000원					
	녹 화 또는 녹 음			중계방송료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중계방송료와 동일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별표4]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 기 료		기본료 + 실사용료	
전 광 판	시민운동장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구미체육관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20,000원)	
냉 난 방	냉 방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 연료대(가스료)	
	난 방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 연료대(가스료)	
음향설비		기본시설사용료(20,000원) + (마이크수× 5,000원)	
수 도 료		실사용료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 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사 용 허 가 서

허 가 번 호 : 제 호

신청자 주소 :

성 명 :

사 용 시 설 :

사 용 목 적 :

사 용 일 시 :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귀 하

